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개선 연구」

2024. 3.

제출자: 연구그룹 로랩

(연구책임자 최승재)

〈목 차〉

제1장 서론	4
제2장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5
제1절. 서론	5
제2절.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	11
제3절. 여타 인증 및 평가제도와 비교	11
제4절. 검토의견 및 요약	19
제3장 개선방안 검토	20
제1절. 문제의 소재	20
제2절. ‘인증’ 용어의 변경 필요성 및 영향 분석	29
제3절. 지식재산 인증제도 운영방식 변경 필요성 검토	38
제4장 법안의 제시	50
1안. 인증제도 유지 + 법안보완	50
2안. 인증 대신 우수기업제도	53
3안. 인증 대신 평가제도	55
제5장 결론: 보고서의 요약	66
참고문헌	68
고지	7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국회 및 특허청 외부 지적사항 대응 및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를 작성함.

제2절. 연구내용의 요약

- ‘인증’ 용어의 변경 필요성 및 영향 분석
 - ‘인증’이라는 용어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 인증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한 ‘인증’용어 변경 필요성 및 ‘인증’용어 변경시 파생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지식재산 인증제도 운영방식(민간경상보조vs민간위탁) 변경 필요성
 -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중인 인증제도에 적합한 운영방식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 인증제도 운영방식 변경 필요성 검토
- 지식재산 인증제도 관련 법개정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 변경시 위탁근거 등 법개정 필요성 검토
 - 지식재산 인증제도 관련 법령간 체계 검토를 통한 법안(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제1절. 서론

-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의 근거로 하여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인증제도를 운용함(우수기업 제도에서 법개정으로 인증제도로 개정함)
 - 발명진흥법은 2024년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2개의 인증제도**(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와 직무발명인증제도를 운용하게 됨)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제도의 확산을 도모함.
- 이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경영인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제2절.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

1. 개관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한 제도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임.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 위 발명진흥법을 이어받는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은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경영인증 사업의 개요

가. 지원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문제는 발명진흥법이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1항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음.

- 법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바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별도로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인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정의를 할 수 있음. 반일 이런 규정이 없다면 해석에 의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정의)은 지식재산경영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정의규정(제2조)은 다음과 같음.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정의는 별도로 없음. 그리고 별도로 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정의를 두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6. 8., 2013. 7. 30., 2015. 5. 18., 2023. 1. 3., 2024. 2. 6.>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삭제 <2024. 2. 6.>

7. 삭제 <2024. 2. 6.>

8. 삭제 <2024. 2. 6.>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 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시행일: 2024. 8. 7.]

-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당해 조문에서 괄호로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가 간이할 것으로 판단됨. **후자를 권함.**

나. 신청시기 및 방법

- www.ripcc.org/ipcert로 상시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진행절차는 신청기업이 자가진단 및 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에서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운영기관에서 방문심사를 한 후 특허청에서 선정여부를 결정함

다. 심사항목

발명진흥회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10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점
직무발명 활성화	5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21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8점	지식재산권 적용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6점	제품 매출 비중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8점
지식재산권 교육	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7점

라. 인증기업의 주요 혜택

부여기관	혜택
특허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차등록료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게는 4~9년차 연차등록료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 특허청 실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글로벌IP스타기업,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IP 활용전략 지원사업, IP R&D(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융자 시 한도 증액(45억원 → 7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의 혁신형기업 기준 적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라디오 방송광고비 및 제작 50~70% 할인
SGI 서울보증	▪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신용등급별 차등) 및 이행보증 보험료 등 10% 할인 ▪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 제공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 등록제로 전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음.

제도명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소관부처	특허청
목적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문화 보급과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근거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인증마크 /표시		(별도 인증서 발급)
인증절차		자가진단 및 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 발급 → → → *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2022-19호)
검토 결과 요약	적절 성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증제도로 적절하지 않음 ○ 국가표준, 국제표준, 기술규정 등에 근거한 적합성 판단 기준이 없음 ○ 특허청의 임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하는 것은 인증제도로 적절하지 않음 -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조(인증 및 갱신심사)
	경제 적· 사회 적 가치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문화 보급과 확산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16년 제도 시행 이래 '22년 기준 총 1,044개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음
	기업 의 부담 성	☐ 행정절차와 수수료는 정부의 지원시책(수수료 감면, 우대혜택 등)을 고려하면 부담성은 적음 ○ 수수료: 33만원(신규 인증), 11만원(갱신 인증) ○ 유효기간: 3년 (갱신 가능)
종합의견		☐ 등록제도로 전환 (부처수용/불수용)
		☐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인증에서 제외 권고 ☐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허청의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유지 필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증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에 근거한 품질경영체제(ISO9000 표준시리즈) 채택 방안 검토 필요

제3절. 여타 인증 및 평가제도와와의 비교

1.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특허청의 인증제도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있음. 발명진흥

회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됨

이 제도로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로 마찬가지로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음. 경영인증도 ‘인증’이라기 보다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포상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됨. 즉 ‘인증’이라기 보다는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발명진흥법 제11조의2는 종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제에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라는 표제로 바꾸면서 발명진흥법상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를 따라서 개정된 것으로 보임. 2024년 2월 6일 개정되었고, 2024년 8월 7일 시행예정임.

현행법	개정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	<현행과 같음>

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	---

만일 경영인증제도를 인증이라는 용어사용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해서 다른 제도로 변경한다면 발명진흥법 개정시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공정거래위원회의 CP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정의함. CP 관련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5조의3(과징금부과) 제3항의 수권규정에 의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고시’)을 제정하고 있었음.¹⁾ 2023년 개정전 구 ‘공정거래법’

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음.²⁾

<법개정연혁>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적 법집행에만 의존하여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경쟁법 정책의 운영방식을 모색하였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 CP의 도입 및 확산 프로젝트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3월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를 출범하여 7월 CP의 표준모델인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 업계에 CP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CP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2001년에는 자율준수 규범의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20~30% 감경, 공표명령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의 50% 이상 감경하였다. CP운영 업체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착수에서 제외하거나 경고 조치만 내리도록 하였다. ³⁾
2002년	인센티브제도를 체계화하여 CP를 실질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경우(1단계)에는 과징금을 2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

1) 김건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2014) 326면.

2) 2023년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신설.

3) 김건식, 327면.

	고, 공표수준 하향, 고발조치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한 경우(2단계)에는 과징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명령 면제·고발조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상의 별점감점, 대규모소매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였다. ⁴⁾
2006년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등급평가제 시행
2010년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법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필요성, 사업자 단체의 CP평가에 따른 공정성 우려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 고시’를 개정하였다. 즉, 기업체의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시 과징금 경감 등의 유인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수행하였던 CP등급평가를 공정·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부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이관함 ⁵⁾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 후의 제도 변천 과정에서는 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근거로 한 제재 감경의 부당성만 강조되고, 자율적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었다.⁶⁾ 그 결과 CP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거의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만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끝에 2016년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이후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숫자마저 급격히 감소되어 CP 제도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왜곡된 결과는 기업들의 사전적인 범위반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일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4) 김건식, 328면.

5) 김건식, 328면.

6) 이기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16권 3호 (2017) 218-219면.

할 CP 제도의 운영에 있어 범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의 감경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본말이 전도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⁷⁾

2023년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제120조의3**을 신설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조문을 두고 평가기관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본 조문들은 2023. 6. 20. 신설된 조문들이고 시행은 2024. 6. 21.부터임.

-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이기종, 219면.

[본조신설 2023. 6. 20.]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120조의3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법정인증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이에 대해서 자율준수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런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속에서, 회사나 회사 임직원들의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형사제재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위법행위 발생 시 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을 통해 경쟁당국의 조사나 제재에 따른 과징금,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⁸⁾)

제4절. 검토의견 및 요약

①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특허청의 발명 진흥법상의 인증제도는 그 입법의도와 목적, 혜택의 부여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② 특허청의 인증제도는 이름은 인증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을 놓고 보면 평가를 한 뒤에 그 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혜택의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제도라고 할 것임. 이런 경우에도 인증이라는 제도의 명칭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권위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임. 그럼에도 인증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③ 특허청의 경영인증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직무발명인증제도의 원래 명칭인 우수기업 지원제도에 착안하여 ‘우수기업 선정제도’와 같이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김건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2014) 319면.

제3장 현행제도 검토

제1절 문제의 소재

-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중인 인증제도에 적합한 운영방식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 인증제도 운영방식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경영우수기업으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인증’제도의 용어를 변경하면 발명진흥법, 동법 시행령, 경영인증 운영요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정보고객정책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심사제도과),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디자인심사정책과) 개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해서 법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 더해서 이렇게 제도 운용을 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 변경시 위탁 근거 등 법개정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함.

제2절. ‘인증’ 용어의 변경 필요성 및 영향 분석

1. 문제의 소재

- ‘인증’이라는 용어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인증은 규제로서 기능할 수 있음. 현행 발명진흥법상의 인증제도는 규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타 인증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한 ‘인증’용어 변경 필요성 및 ‘인증’용어 변경시 파생될 영향 분석하고자 함.

2. 논의의 전제

- ‘인증’이라는 용어의 의미

- 협의(狹義)의 인증(certification)이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을 의미함.
-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은 인증(Certification)에 대해서 인증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한 규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보증이라고 정의함(the provision by an independent body of written assurance(a certificate) that the product , service or system in question meets specific requirements.)⁹⁾
- 여기서 중요한 것이 ①특정한 규정예의 부합, ②독립기관에 의한 보증이라는 두가지 요소라고 생각됨. 전자는 인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후자는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 내지 방식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인증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credibility)를 제공할 수 있음. ISO의 경우에는 이런 목적으로 ISO 9001, ISO14001 등의 표준을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¹⁰⁾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음.
-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약체결여부나 계약이행여부가 정해질 정도로 안전인증은 거래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112308 판결(일본 JET인증이 문제가 된 사례)>

원고가 태양광모듈을 일본에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E' 제품 카탈로그에 '피고가 현재 국내에서 Cell과 Module을 직접 생산하며, 미주/유럽/일본/호주 등 세계 각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제16호증의 1, 제3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9) <https://www.iso.org/certification.html> 2024. 3. 16. 최종접속

10) <https://www.iso.org/committee/54998.html> 2024. 3. 16. 최종접속

같은 사실, 즉 'E' 제품 카탈로그 '인증 및 제품 보증' 관련 정보에 위 제품이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중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이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면허업자에 의해 대한민국에 설치되고, 피고에서 판매한 J 모델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의 일본 법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하여 일본 안전인증(JET 인증)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과 동일한 제품이나 그 상품명이 'K' 및 'L'인 제품에 관하여 일본 안전인증(JET 인증)을 받아 일본 법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인 I은 2016. 9. 20. 원고 대표이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게 한국인증은 있는데 일본인증이 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일본사업부에'라거나 '근데 일본인증서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일본에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을 매수하였고 'E' 제품 카탈로그에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E' 및 'D'에 관하여 일본 안전인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규격(規格)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의 인증은 정해진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의미에서의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도 협의의 인증의 대상이 됨.
 - 규격인증은 표준화 문제와도 관련이 됨. 표준화를 통해서 그 규격(specification)에 따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퀴컴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표준기술이란 정부, 표준화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는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을 표준기술로 선정한다.”라고 하면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실시허

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이다. 표준필수특허는 실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라 한다)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 약속(이하 ‘FRAND 약속’이라 한다)이
요청되는 특허이다. 표준필수특허는 그 개념상 그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제품이나 방법을 제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필수특
허권자의 실시허락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와 구별하여 “표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허들은 표준필수특허와 구분하여 비-표준필수특허(Non-SEP)
또는 기타 특허라 부른다. 비-표준필수특허는 정해진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거나 우회 또는 회피 설계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표준필수특허의 역할에 대한 판시를 하였
음.¹¹⁾

- 퀵컴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시하였음.¹²⁾

서울고등법원은 긍정적인 효과로, “표준화함으로써 오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상호호환성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있다. 표준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품
호환성이 확보되면, 제품의 효용은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둘째, 표준화는 생산자에게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낳는다. 셋째, 표준기술을 이용하는 하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제품 전환비용,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신기술 개발촉진,
품질향상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를 열거하였고, 표준화의 부정적
효과도 열거하였다(“첫째,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표준 선정 이전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대체관계에 있던 기술 사이의 경쟁이 인위적으로 소멸하
고 해당 기술시장에서 진입장벽이 구축된다. 둘째, 지배적 표준기술을 보유한

11)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기업은 표준화를 통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표준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이른바 ‘특허억류(Patent hold-up)’를 할 우려가 높아진다. 셋째, 부품 사업자·네트워크 사업자 등 해당 산업의 참여자들의 매몰비용(sunken cost) 증가 등으로 시장이 당해 표준에 고착(lock-in)되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증가한다.”).

- 협의의 인증의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품질(品質), 규격(規格), 성능(性能)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적합여부를 심사·평가함.

신청 → 시험·검사 → 평가 → 인증(마크 부여) → 사후관리(취소, 재인증 등)

3. 인증은 법률의 규정(legal certificate) 또는 계약(contractual certificate)에 의한 이루어짐

-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증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안전분야에서의 인증임. 식품위생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인증제도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계약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방지(polizeiliche Gefahrenabwehr)라는 전통적 기본 원칙에 따르면, 위험은 반드시 구체적이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비로소 고권적 조치(hoheitliche Maßnahmen)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강제수단(Zwang)을 동원할 수 있는 바, 전통적 학설에 따르면 예방적 방지조치(präventive Gefahrenabwehr)인 것이 상황의 진전에 따라 위험회피(Gefahrenvermeidung)로 그 의미를 바꾸어가게

됨¹³⁾

- 개념상 위험방지와 위험회피는 별개이다. 위험방지는 위험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위험회피는 아예 처음부터 위험의 발생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인증은 위험방지에 목표를 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찰행정과 구별됨

○ 법정인증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인증취득 없이 생산·유통을 금지하는 **의무인증**과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으로 구분됨

- ‘법정인증’이란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인정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함. 본 보고서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 인증도 법정인증의 한 종류임.
- 해외의 경우 법정인증은 안전, 의료, 보건 등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93개, 유럽연합의 경우 40개, 중국은 18개, 일본의 14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안전관점에서의 인증**은 사전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의 사전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법률의 개별 조항에서는 위험과 사전대비의 관계는 별로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치가 사전대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예방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건강에 관한 위험 자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여하튼 이때 위험은 통계적 내지 추상적-일반적 성격을 지닌 데 불과하다”),“

○ 2022년말 현재, 25개 부처청에서 256개 인증제도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인증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설이 증가하여 2010년말 대비 100여개 증가함.

- 안전성 확인보다는 **품질보장** 또는 특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장·급부행정 수단으로 인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①인증비용 감면 ② 불합격을 낮은 임의인증 폐지, ③ 유효기간 연장, ④국제표준과의 통일, ⑤인증기준 시험방법 개선, ⑥유사·중복인증 통합 등의

13) 변무웅, “식품안전 영역의 사전대비 원리”, 한양법학 제21집 (2007. 8.) 343면.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임. 인증 취득·유지를 위한 기업의 부담 과다(중기중앙회 조사, 2022.10)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56개 인증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관계기관 협의를(2023. 2~2023. 12)를 거쳐 9대 개선방안 마련중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인증제도 정비	❶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❷ 유사·중복 인증 통합 ❸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 ❹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❺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❻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❼ 해외인증 인정 확대
관리시스템 개선	❽ 인증 신설 절차 강화 ❾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4. 인증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본건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전·의료·보건분야의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인증이라고 하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이들 인증은 국가·국제표준 유무, 적합성 평가체제구축 여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 등의 준부를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경영인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지식재산경영인증은 이와 중복되는 다른 인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혜택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사·중복 인증 통합의 필요성도 있음.
 -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제작 자동차 인증시 ‘배

출가스'에 대한 인증과 '소음' 인증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환경부).

- 지식재산경영인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지식재산경영인증은 달리 이와 통합할 다른 인증이 존재하지 않음.

○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의 필요성도 있음.

- 기업의 편의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기정통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산업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경영인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기간은 연장하는 것은 지식재산경영인증과 같은 경영인증의 경우에는 혜택만을 누리고 효과는 없는 부당한 상황을 야기할 위험도 있음.

○ 지식재산경영인증은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산식품 명인 지정(해수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고용부)등이 이에 해당함.
- 지식재산경영인증의 경우는 수혜자가 중소기업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인증으로 인해서 혼선이 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4.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의 경우 '인증'이라는 용어 변경과 관련된 쟁점 검토

가.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의 경우 '인증'이라는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에서 인증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 인지 여부

-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하는 제도 자체가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봄.
-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이런 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 요건의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의(廣義)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음. 사건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대상이 반드시 안전, 의료,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도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봄.
- ‘인증’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음. 법정인증은 그 취지상 남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56개의 ‘법정인증’이 2023년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가 진행중임은 앞서 살펴보았음. 이와 같이 다수의 법령에서 인증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발명진흥법상의 지식재산경영인증을 특정하여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임.
- 지식재산을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하고 이런 지식재산 중심경영을 하는 것이 기업경영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나.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의 경우 ‘인증’이라는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발명진흥법상 지식재산경영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인증’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결론적으로 이런 점에서 인증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봄.
그 논거는 아래와 같음.

① 지식재산경영인증은 안전, 의료,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인증과 같은 협의의 인증은 아님. 인증은 정부부처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경영인증의 경우에는 발명진흥회가 주는 공신력에 기초하여 대상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인 바, 인증제도와 취지상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임.

②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반드시 인증이라는 형식이어야 하는 것인지는 구별됨. 인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기업경영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기업경영의 개선에도모할 수 있다고 봄.

③ 이런 점에서 현재의 인증제도 제도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제도로 바꾸고 기업의 자기인증(자체점검) 후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당해 자기인증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④인증제도는 반드시 HACCP인증¹⁴⁾과 같은 품질, 규격, 안전성 등에 대한 인증의 경우(협의의 인증)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인증도 광의의 인증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경영인증(예를 들어 ISO 37001)의 경우에는 협의의 인증과 달리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나 규격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이런 점에서 양자는 서로 구별됨.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인증도 일종의 경영인증이라고 할 것인데, 경영인증을 인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협의의 인증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증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

14) <https://www.haccp.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함.

다. 등록제도로의 전환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국무조정실이 정비 대상 인증 제도는 각 부처의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중기부 이노비즈인증, 벤처인증 등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었다고 함.
- 살피건대, 성격상 중기부 이노비즈인증, 벤처인증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다만 사건으로 벤처인증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의 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완전한 경영인증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보다는 협의의 인증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
- 그렇다고 인증을 등록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등록제도는 특허청이 관할하는 법령인 특허법, 상표법 등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으로 등기와 등록은 권리의 발생 및 변경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미 사용하고 용어와 혼용할 경우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이 있으며 ‘등록’은 특허청 소관법령에 서는 근간을 이루는 중요개념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소지가 큼
- 등록제도로의 전환을 권고한 이유를 본다.

「국가표준기본법」¹⁵⁾에 근거한 적합성평가¹⁶⁾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인증에서 제외 권고를 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허청의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유지가 필요하다고 봄.

그러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증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에 근거한 품질경영체제(ISO9000 표준시리즈) 채택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축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6) 「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국가표준기본법」상의 품질경영체제와 지식재산경영인증은 경영에 대한 인증이기는 하나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말하는 인증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임. 만일 우리나라 현행 법령체계에서 인증의 개념을 「국가표준기본법」상의 인증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로 한다면 오히려 등록제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등록도 인증도 아닌 제3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증’이 사용된 조문 >

제2조 (정의)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 설계평가,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공식화한 심사형태를 말한다.
21. “국가통합인증마크”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6. 12.>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 6의3. 교정·인증·시험·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5., 2018. 6. 12.>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8. 6. 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 27.>

[전문개정 2009. 4. 1.]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6. 12.>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영인증에서 인증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지식재산경영 모범기업’,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 등과 같은 평가결과에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발명진흥법의 인증은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가에 가깝다고 할 것임.** 인증은 평가를 수반하기는 하지만 평가가 인증은 아님.

아래의 법원 판결¹⁷⁾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안전관리인증(HACCP)은 인증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인증이고, 이 경우에도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은 아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해당 작업장" 별로 작성,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안전관리인증(HACCP)의 선행요건으로서 제출한 작업장관리기준서(위생관리기준서, 제조시설관리기준서, 냉장냉동관리기준서, 보관운반관리기준서, 관리기준서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058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는 위 회사의 작업장이 '서울 성동구 E, 3층'임을 전제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층 작업장이 아닌 G 주식회사의 4층 작업장에서 가공된 축산물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발명진흥법상의 지식재산인증은 경영평가를 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정한 규격이나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는 기업임을 보여주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아래와 같은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은 발명진흥법상 '인증'이 실질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줌.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10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점
직무발명 활성화	5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21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8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6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8점
지식재산권 교육	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7점

○ HACCP인증과의 비교

－ 우리나라에는 1995년 도입된 제도(“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인 1995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규정이 신설되어 HACCP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12월에‘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 최초로 고시됨으로써 HACCP제도의 적용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가공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업종별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해 주는 자율적인 지정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¹⁸⁾)임.

18) 김태오, “미국 식품안전규제법제의 체계와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2008. 11.) 280면.

- HACCP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업무를 수행함.
 -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합친 영문 약자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지정한 식품에 대한 인증이며,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제거하며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 제도임.
- 이렇게 인증된 식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샘플검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위생을 판단하였으나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인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과거에는 검사관들이 위해성 검사를 위하여 설비의 특정 지정점(spot-checks) 만에 국한된 검사와, 최종 제품 중 일부 견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HACCP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리기록을 통해 정부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식품안전법제를 준수하였는지 확인이 용이하므로, 정부의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정부의 검사가 수행되는 그 날에만 위생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또한 사업자가 세계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거래의 장벽을 저감시키기도 한다.”¹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9) 김태오, “미국 식품안전규제법제의 체계와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2008. 11.) 280면.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5. 용어변경에 대한 대안제시 및 용어변경시 영향에 대한 검토

-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 등에 “인증”용어 삭제하고 이를 ‘지식재산경영 모범기업’,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 등과 같은 평가결과에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용어로 바꾼다고 해서 현재의 제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경영평가와 관련된 인증은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래의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인증기업이라는 용어에서 주는 이미지 대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됨. 양자 모두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봄.

제3절 지식재산 인증제도 운영방식 변경 필요성 검토

1. 문제의 소재

- 특허청의 고유사무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증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식을 민간경상보조방식을 취할지, 민간위탁방식을 취할지의 문제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위 두 방식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 만일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물론
- 국가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재정투입의 근거가 법령에 있어야 이를 근거로 해서 재정투입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 변경시 위탁근거 등 법개정 필요성 검토가 필요함

2. 민간경상보조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의 비교

가. 민간경상보조방식

- 민간경상보조방식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 또는 특정분야 산업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²⁰⁾에서 규정되어 있음. 결국 민간경상보조방식은 보조사업은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판례에서도 이런 보조방식과 관련된 쟁점을 가진 경우가 있음²¹⁾ 지방정부 또는 민간 가능 사무이나,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바, 인증으로 국한하여 보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인증,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인증,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신기술 제품 인증 등이 이에 해당함. 인증제도 운영 행정기관이 사업 수행 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용하는 사례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있다.²²⁾
 - 보조금 지원방식은 여러 활용방식이 존재하는 바, 지금 지식재산경영인증에서 논의하는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하여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예산과목 상 민간이전경비 항목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호** 등의 활용방식이 있음.²³⁾
- 지방정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분석논문에 의하면²⁴⁾ 보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①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은 대상 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과 정액보조단체로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대두되어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고, 대상 단체 선정을 위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21) 예를 들어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74488 판결(“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업을 장려·진흥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차 차이에 따른 금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3) 김시형·남창우,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4호(2014. 12.) 226면.

24) 경상북도의 경우를 분석한 논문으로 김시형 외, 위의 논문, 223-246면.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과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음.²⁵⁾

② 그럼에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민간안전경비(사회단체보조금의 상위개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며 이들이 선심성, 정치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관변단체로 조직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함²⁶⁾

이런 점에서 이 방식으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민간위탁방식

○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행정서비스 중 일부를 민간기업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함.²⁷⁾ 이와 같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사례로는 도서관, 청소용역, 도로정비, 가로수 등이 있음.

－ 이런 민간위탁방식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기업과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민간위탁의 목적으로 함.²⁸⁾

○ 행정 관여의 범위를 축소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민간위탁방식의 법적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이 있음.

－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조는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25) 위의 논문, 224면.

26) 위의 논문, 224면.

27) 윤태경, “지방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3권 1호(1999) 100면.

28) 위의 논문, 100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이 영에 의하면 제2조 제3호에 의해서 규율됨²⁹⁾ 이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 등의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공익보다 능률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 사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로 소방장비 인증, 환경표지인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 등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위탁근거 마련하여 그 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래야 행정법상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위임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여 질 것으로 보임.³⁰⁾

3. 검토의견

- 결론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음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0) 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민간위탁업무의 취지를 고려하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해 보임.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특허청장의 고유업무임. 정부조직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 바,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증, 평가, 우수기업지정 등을 한다면 이는 특허청이 하여야 하는 사무임.

특허청의 고유사무인 지식재산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사업비 세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면에서 공급자간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³¹⁾

현실적으로 인증기관 내지 평가기관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이며, 이런 점에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도운용의 취지를 고려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해 기관의 책임하에 인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청이 수탁사의 자율권 보장과 통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있다는 실증연구결과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³²⁾

31) 윤태경, 101면.

32) 배성기·안영진,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제28권 제1호 (2014. 3.) 65-76면(“전국 246개 자치단체 민간위탁 13,277 사무 담당공무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유효한 524샘플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모델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조례, 입찰, 비용, 평가)이 운영성과(비용절감, 업무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통제·자율요인이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과 운영성과와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8개의 가설 중 입찰요인과 비용절감, 입찰요인과 업무개선에 대한 2개의 가설만이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민간위탁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인식이 수탁사의 경영권(재정운영권, 직원채용 및 관리권,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운영권)을 보장해 줄수록 비용절감과 업무개선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결과이며, 이는 수탁사의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현행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인증업무 소요경비 지원의 명목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해 보임.**

예산상 세목이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사용)로 편성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식재산 경영인증은 201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근거한 특허청장의 고유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가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인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허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³³⁾로 편성하고,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기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³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특허청이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부합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은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③ **더해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수수료를 인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발명진흥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하면 타당성에 의문이 있음.**

33)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생략)

34)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기금전출금(610 -03)목으로 편성

- 먼저 발명진흥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근거하여,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출장 경비 등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6항(“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과 시행령 제9조의6(인증의 비용)(“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의 위탁경비는 개별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9.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나. 위탁경비의 산정

- 개별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경우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받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지식재

산 경영인증 운영요령」(특허청고시)³⁵⁾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른 것임.

- 2022년도 인증 수수료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경영인증 방문 심사위원 수당’ 등 인증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외에도 ‘지식재산 경영인증 홍보 등’ 인증과 관련된 비용(간접비)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인증 수수료를 받고 있고 누적 미집행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同) 인증심사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인증 수수료 징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인증 수수료를 적립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인증 수수료 부과 사유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기업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인증 수수료를 적립하기보다는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 비용을 민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필요한 위탁경비를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④ 법률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을 살펴보아야 함. 현행 대한민국법률 중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는 이 규정이 거의 유일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입법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영 제1조는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35)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6조(인증비용) ①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인증 신청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3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음.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즉,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이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상 수탁기관은 자신의 명의(이름)와 책임으로 업

무를 수행하게 됨.

- 따라서 만일 인증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명의를 당해 수탁기관이 되고, 책임도 당해 수탁기관이 부담하게 됨
- 제3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청도 이에 따라서 지식재산인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특허청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지휘 및 감독을 하여야 함[“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령 제6조의 지휘 및 감독)]
- 영 제3장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발명진흥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아래의 규정이 적용됨.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

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 영 제4장 이하는 대통령 소관 권한(제17조)을 포함한 각 행정부처의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특허청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제4장. 법안의 제시

1. 아래의 3개 법개정안 중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법개정 사항

가. 신청대상 중소기업을 상위법령에 규정함

현행법	개정안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아래 1, 2, 3안 중 어느 안을 택하더라도 현행법상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모두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 현행 발명진흥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이 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런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나.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 의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위탁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현실에서는 발견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고유 권한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 것이 타당함. 물론 근거법령이 없으면 앞서 언급한 ‘행정위임 위탁규정’에 규율이 이루어지게 되나, 법치행정의 원칙상 위탁의 근거를 발명진흥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이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인바, 현행법과 같이 인증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증사무를 민간위탁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 1안) 인증제도는 그대로 두고 입법상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안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제정비만으로 족할 것으로 보임.

가. 신청대상 중소기업을 상위법령에 규정함

현행법	개정안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	제24조의2(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나. 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발명진흥법 제24

조의3 신설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제7항에서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문구 삭제 후 제24조의3 신설(인증기관 지정)

현행법	개정안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등)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24조의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증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 삭제

현행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2. 2안) 지식재산 경영 인증제도를 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선정제도로 바꾸는 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규정 및 근거규정은 그대로 필요함.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는 현재의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우수기업제도를 참고함.

참고로 이 제도는 2024. 8. 7.부터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제도로 변경될 예정

입.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발명진흥법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³⁶⁾)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삭제>³⁷⁾ ⑥ 특허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항을 ⑤항으로 개정) ⑦ 선정절차·비용, 선정기준, 우수기업마크, 우수기업 선정업무 운영기관 지정,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항을 ⑥항으로 개정) [본조신설 2016. 1. 27.]
---	---

나. 발명진흥법 제24조의3신설(현행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을 상위법으로 올리는 개정)

현행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발명진흥법 제24조의3(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

36) 법안 표현형식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가목 등 현행법의 표현형식과 같이 하였음.

37) 우수기업선정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계속 요건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우수기업 선정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 위와 같이 용어를 변경하면 위에서 제시한 발명진흥법, 동법 시행령 개정 외에 경영인증 운영요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정보고객정책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심사제도과),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디자인심사정책과) 개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고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개정은 언급하지 않음.

3. 3안) 공정거래법과 같이 경영인증제도를 지식재산 경영 평가제도로 바꾸는 안

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평가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

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평가(이하 “평가”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결과 등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평가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참고조문] 위 조문은 공정거래법 제120조2의 평가에 대한 조문을 참고하였음.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발명진흥법 제24조의3 신설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24조의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은 지식재산 평가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평가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평가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 제5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
--	---

	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참고조문] 위 조문은 공정거래법 제120조3의 평가기관 지정조문을 참고하였음.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라.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 삭제

현행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 위와 같이 용어를 변경하면 2안과 마찬가지로 평가결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용어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발명진흥법, 동법 시행령 개정 외에 경영인증 운영요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표/정보고객정책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심사제도과),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디자인 심사정책과) 개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고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개정은 언급하지 않음.

4. 3개의 안에 대한 비교 검토의견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책적인 이유, 법제적인 이유에서 보조하는 형식보다는 민간위탁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안의 경우에는 인증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법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2안, 3안과 구별됨.
- 2안, 3안은 모두 인증이라는 용어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2안은 우수기업 지원제도로, 3안은 평가제도로 변경하는 것임. 2안은 발명진흥법을 참고할 것이고, 3안은 공정거래법을 참고한 것임.
-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경영을 잘 하는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을 줄 것인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것인가, 평가를 해서 그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는 단순한 용어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증이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2안이나 3안의 방식 중에서 정책적으로 택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안의 경우 발명진흥법을 개정해서 현행 직무발명우수기업을 폐지하면서 다른 조문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3안을 제안한 것임.
- 민간위탁은 어느 경우나 가능하다고 할 것임(참고로 2안은 처음 시행령에 우수기업선정기관의 지정에 대한 조문을 규정하였으나 다른 안과 같이 법제24조의3을 신설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제안으로 변경함)

- 현행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제7항은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명진흥법 제56조를 근거로 법 시행령 제29조 민간위탁대상에 인증, 우수기업선정이나 평가기관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민간위탁시의 위임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봄.³⁸⁾

2024. 2. 6 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제56조 제2항은 종래 제1항의 위임 외에 위탁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2024. 2. 6 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제56조 제2항은 종래 제1항의 위임 외에 위탁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그러나 이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일 뿐, 개별적으로 지식재산인증을 위탁하는 근거는 아님(개별적 위탁의 근거 규정)
- ② 포괄적인 위탁의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56조 제2항은 위탁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만일 이들 기관 외의 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될 수 있음.
- ③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영인증운영요령 제13조의 승계규정을 포함할 필요 없이 기존에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기관에게 위탁하면서 이 기관에 대한 위탁조건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38)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0. 2. 4., 2021. 4. 20., 2022. 2. 3.>

사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위탁사무의 구체적 위탁과 이를 통한 특허청의 감독사항 명확화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됨.

제5장. 결론: 보고서의 요약

1.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인증은 협의의 인증, 즉 규격의 인증, 안전성의 인증과 같은 인증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국가표준법’의 인증에 대한 입법태도나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기관에 대한 조문 등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발명진흥법의 인증이라는 용어는 협의의 인증에 부합하는 용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그러나 경영인증의 경우에도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준법통제에 대한 경영인증과 같은 광의의 인증이 사용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협의의 인증이 아니라고 해서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더해서 법정인증을 없애는 방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다수의 경영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증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다고 봄.
4. 이런 점에서 1안으로 현행법이 사용하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①신청대상 중소기업을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②발명진흥법 제24조의2 제7항에서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문구 삭제 후 제24조의3 신설(인증기관 지정)하고 관련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삭제하는 입법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됨.
5. 2안으로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6. 3안으로는 공정거래법과 같이 ‘인증’ 대신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³⁹⁾ 이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7. 위의 3가지 입법대안들은 모두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 가운데서 특허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하여 입법적인 논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음.
8. 인증 대신 평가나 우수기업지정과 같은 다른 용어로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에 더해서 민간위탁방식을 취하여 기존의 민간경상보조 방식을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민간위탁방식과 민간경상보조의 제도 차이 및 특허청의 고유업무인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법제의 취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규정과의 부합성에 있다고 판단됨.
9. 위와 같은 법 개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안을 3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한 바, 이들 가운데에서 특허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하여 입법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39) 이기중, “공정거래 CP 활성화를 위한 CP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CP 평가의 2원화를 통한 CP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6권 4호 (2023)(“첫째, 독립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적·실질적 사후평가인 인센티브 평가를 근거로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전평가인 인증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정거래 CP의 확산을 촉진한다. 다만 이러한 2원화 방안은 공정거래법의 추가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민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종래의 평가방식과 급격하게 다른 방안을 단기간에 도입할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건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2014)
- 김시형·남창우,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4호(2014. 12.)
- 김태오, “미국 식품안전규제법제의 체계와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2008. 11.)
- 노상섭,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논집」 제14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 노순동, “LG전자의 자율적 공정거래법 준수 활동”, 「공정경쟁」 제6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0)
- 박세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 배성기·안영진,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회보 제28권 제1호 (2014. 3.)
- 배종균,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유인 제도 개선의 의의와 시사점”, 동아법학 통권87호 (2020)
- 변무웅, “식품안전 영역의 사전대비 원리”, 한양법학 제21집 (2007. 8.)
- 서남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제도의 이해”, 「경쟁저널」 제15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 성희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윤태경, “지방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3권 1호(1999)

이기중, “공정거래 CP 활성화를 위한 CP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CP 평가의 2원화를 통한 CP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 연구 36권 4호 (2023)

이기중,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16권 3호 (2017)

최승재,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발제문 (2023. 9. 1.)

Charles J. Walsh & Alisa Pyrich,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as a Defense to Criminal Liability: Can a Corporation Save its Soul?, 47 Rutgers L. Rev. 605, 645 (1995)

Cristie Ford & David Hess, Can Corporate Monitorships Improve Corporate Compliance?, 34 J. Corp. L. 679 (2009)

Gary R. Spratling,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Remarks at a National Symposium Sponsored by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September 8, 1995)

고지

본 보고서는 특허청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청이 제공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특허청 외부공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